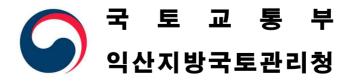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재 협 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2021. 0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본 사업노선은 국도30호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지내 무주태권도원, 무주구천동, 덕유산국립공원 등이 위치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2차로 신설을 통해 간선기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의 목적

○본 사업노선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시행하여 계획된 노선에 대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03.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05. 08.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새만금지방환경청 : 1공구(10.9km), 2공구(7.3km)]
- 2005. 10. 21.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6. 12.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조사 대상사업(한국개발연구원(KDI)
 - 타당성 조사 결과 : 도로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위험도가 50% 이상으로 평가되어, 도로안전성 제고 목적 등에 부합 되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 있음 (L=10.9km, 2차로 시설개량 변경)
- 2018. 05. 09. : 실시설계(보완) 착수
- 2018. 06. 27.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용역 착수
- 2019. 04. 30.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2019. 05. 17.~30.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 03.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제출
- 2020. 03.~05.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고·공람 및 설명회개최
- 2020. 09.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 요청

3.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노 선 명 : 국도30호선

○ 연 장 : L=11.04km

○ 사업기간 : 2021년~2026년

○ 소요예산 : 1,512억원

○ 목표연도 : 2046년 (개통 후 20년)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전북지방환경청

나. 사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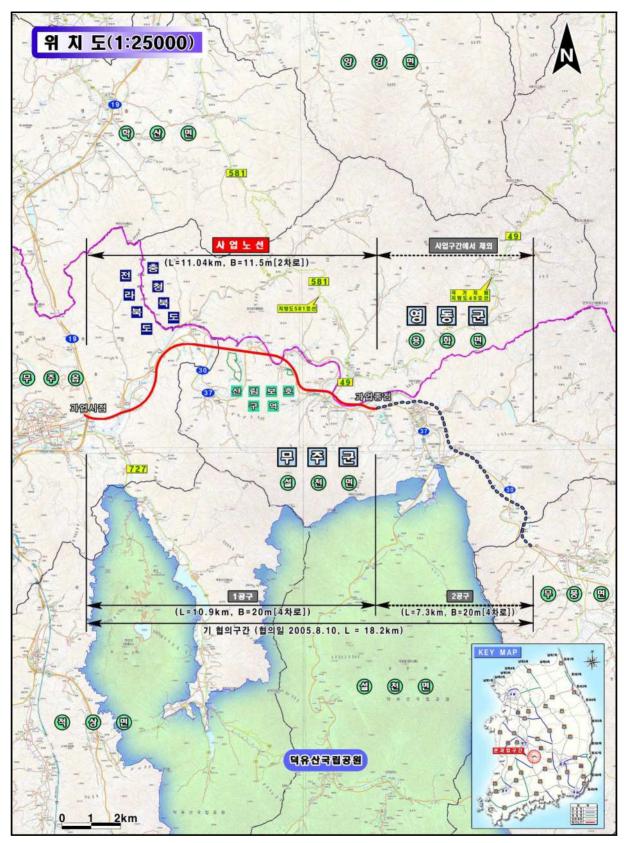
○ 설계속도 : 60km/hr

○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도IV등급

○ 폭 원 : B=11.5~20.5m(2~4차로)

○ 유출입 시설: 평면교차로 4개소(기존교차로 2개소 포함), 회전교차로 3개소

○ 주요 구조물 : 터널 1개소(581m), 교량 12개소(1,445m)



(그림 1) 사업노선 위치도

4. 주민의견 수렴개요

6.1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 주민공람은 무주군청 건설과 외 4개소에서 2020년 3월 13일(금)부터 5월 1일(금)(3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실시함

〈표 1〉 공람공고 내용

구	보	내 용	비고
공 고	H 중	무주군 공고 제 2020-343호	당초
0 1	킨 오	무주군 공고 제 2020-530호	변경
구 그	고 일	2020년 3월 12일	당초
6	- 현	2020년 4월 16일	변경
일간신문	중 앙	경향신문	-
<u> </u>	지 방	새전북신문	_

〈표 2〉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구 분	내 용
공람장소	무주군 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동군 환경과, 용화면사무소
공람기간	○당초 : 2020년 3월 13일 ~ 2020년 4월 24일(3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변경 : 2020년 3월 13일 ~ 2020년 5월 1일(3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6.2 주민설명회

○본 사업은 당초 주민설명회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였으나, 관할 지자체(무주군, 영 동군) 의견과 「코로나19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비대면 설 명회(설명회 자료 영상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로 변경하여 실시함

〈표 3〉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구분	장소		일시	비고	
	당초	무주읍사무소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대면 설명회	
	경소	설천면사무소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대한 결정의	
무주군	변경	무주군 홈페이지	2020년 4월 27일 ~2020년 5월 1일	대면 설명회를 취소하고,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	

	무주군 공	고 제 2020-530호		
Al-		『무주 무주~설	천 도로확장공사』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			최(변경) 재공고
l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아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주~설천 관련 정부	도로확장공사」환경영향평가(재협의 사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리) 초안 설명회 개최를 겨 여 설명회 계획을 취소후 b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
		2020.	04. 16.	
		무 주	군 수	
찬면 소천리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에 비치) vw.eiass.go.kr)에 주민의	이 사 업 이 연 이 사 업지 2. 공람기 > 공답이 - 변경 이 공립장 3. 주면의 이 제출 - 변경 이 제출방	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치 : 권라복도 무주군 무주음 오산리~	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면사무소), 영동군(환경파, 원 01.) 08.) 면제출(양식은 공립장소에 비치	데) 또는
			침(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집-집단행사 연기 및 취소
개최 장소	ी पि	라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설명회 영 ·		
1천면사무소			자스	
2주읍사무소	지 역	당초	변경	비고
	무주군	2020.04.21.(화) 10:00 설천면사무소 2020.04.21.(화) 14:00 무주옵사무소	비대면 설명회 (설명회 영상 게시 기간 : 2020.04.27.~2020.05.01.)	설명회를 취소하고,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현면 소천리 공휴일 제외)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급 철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성 제25도 및 같은 법 시 주 실천 도로확장공사」환경영향평가(제협의) 한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대한 공람 및 설명회 전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청 을 반영하으고, 공립기간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근 2020. 무 주 1. 사업개요 (변경없음) 이 사 업 명 : 무주 무주 실천 도로확장공사 이위 처 관리복도 무주군 무주을 오산리이면 장 : 11.04km 이사업자 및 송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립기간 및 장소 이용되기간 (변경) - 당초 : 2020.03.13.(급) ~ 2020.04.24.(급)(토 변경 : 2020.03.13.(급) ~ 2020.05.01.(금)(토 면경 : 2020.03.13.(급) ~ 2020.05.01.(급)(토 면경 : 2020.03.13.(급) ~ 2020.05.(급)(토 면경 : 2020.03.13.(급) ~ 2	** 보명회 개최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 ** ** ** ** ** ** ** ** ** ** ** ** **

(그림 2) 공고문(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사업장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사업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사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예약하는 곳에 v표 합니다):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 이뉴(세화/F) 글로이나고 생각이는 성수에는 역합니다/	
의견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	
외 개죄의 필요성에 판	만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이 되지만그 드리고 주	TT. Je	
익산지방국토관리청	र्थ नील	

(그림 3) 주민의견 제출서

경향신문(전국일간지)-당초 경향신문(전국일간지)-변경 8 xomerosens 180석 거대 여당 탄생 В поменя из нем 무주군 공고 제2020 - 343호 무주군 공고 제 2020 - 530호 『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 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변경) 재공고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 무주 평가(재협의) 초안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lg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설명회 계획을 ~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취소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4. 17. 2020, 03, 12, 무 주 군 수 무 주 군 수 1. 사업개요 (변경없음) 이 사 업 명 : 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 1. 사업개요 이 위 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ㅇ 사 업 명: 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 ○면 장:11.04km 이 위 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ㅇ 사업자 및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연 장:11.04km 2. 공람기간 및 장소 o 사업자 및 승인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공람기간 (변경) - 당 초: 2020, 03, 13, (금)~2020, 04, 24,(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공람기간 및 장소 - 변 경: 2020, 03, 13, (금)~2020, 05, 01,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기간: 2020, 03, 13, (금) ~ 2020, 04, 24,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무주군(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동군(환경과, 용화면사무소) (변경없음) 공람장소: 무주군(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동군(환경과, 용화면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ㅇ 제출기간 (변경)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당 초: 공탐기간 만료후 7일 이내 (2020, 05, 01.) o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 05, 01,) - 변 경: 공띾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 05, 08.)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환경 이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설명회 개최 4. 설명회 개최(변경) ○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제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 집단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라 설명회 지역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를 취소하고, 설명회 영상을 무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는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2020.04.21.(화) 10:00 설천면사무소 2020, 04, 21.(화) 14:00 무주읍사무소 개최 일시 및 장소 비고 당 초 변 경 2020. 04. 21.(화) 10:00 설천면사무소 비대면 설명회 (설명회 영상 게시 기간 :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설명회를 취소하고, 2020, 04, 27, ~ 2020, 05, 01,) 2020. 04. 21. (화) 14:00 무주읍사무소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 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6)로 문의하시기 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4)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신문)(1/2)

새전북신문(지방일간)-당초



애전북신문

=5147호 ******* 2020년3월12일 목요일 (단기 4353년)

무주군 공고 제 2020-343호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3, 12,

무 주 군 수

1. 사업개요

- o 사 업 명: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 0 위 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 o 연 장:11.04km
- o 사업자 및 승인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o 공람기간: 2020.03.13.(금)~2020.04.24.(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o 공람장소: 무주군(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동군(환경과, 용화면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o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05.01.)
- ㅇ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설명회 개최

지역	개최 일시	개최 장소
무주군	2020.04.21.(泉) 10:00	설천면사무소
TTE	2020.04.21.(到) 14:00	무주읍사무소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전북신문(지방일간)-변경

02 종합

200년 #8 17월 글으로 개천북신문

무주군 공고 제 2020-530호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변경) 재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 무주 ~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을 반영하여 설명회 계획을 취소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2020, 04, 17, 무주군수

1.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명: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 ○위 차: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 ○연 장:11.04km
- 사업자 및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변경)
- 당초 : 2020.03.13.(금)~2020.04.24.(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변경: 2020.03.13.(금)~2020.05.01.(금)(토요일 및 공휴일 재외)
- 공람장소 : 무주군(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절천면사무소), 영동군(환경과, 용화면사무소) (변경없음)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변경)
- 당초: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05,01,)
- 변정: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05,08,)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설명회 개최(변경)

○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집단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라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설명회 영상을 무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하는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4	개최일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당초	변 경	비고		
pan 2020.04.21.(화) 10:00 설천면사무소		비대면 설명회(설명회 영상 게시 기간:	설명회를 취소하고.	
무주군	2020.04.21.(화) 14:00 무주읍사무소	2020.04.27.~2020.05.01.)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영동군 홈페이지 (www.yd21.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계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계속)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신문)(2/2)

무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mu	.ju.go.kr)-당초		무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mu	iju.go.kr)	-변경	
③ 고시공고		□ 고시공고 □ □ □ □ □ □ □ □ □ □ □ □ □ □ □ □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0-343호	등록일 2020-03-12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 2020-530호	등록일	2020-04-16	
제목 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제목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변경) 재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 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 첨부파일: 주민의견 제출서(무주-설천).hwp 02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문(무주-설천).pd 공고문(무주-설천).hwp	획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환경영향	H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평가(재협의) 초안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회 계획을 취소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을 무주군 (변경)공고문(안)(무주-설천).hwp 02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문(무주-설천).pdf 주민의견 제출서(무주-설천).hwp	9 관련 정부: 변경하고자 디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www.yd	21.go.kr)-당초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www.yd21.go.kr)-변경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환경영향평가서(개혐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	회개최공고 2 합경과 2020.03.12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화	티개최(변경) 재공	子고 1 参召事 2020.04.16	
공고문(무주-설천).hwp হq 파일 미리보기			(현경)공교문(안) (우주-설권) hwp 필요 파일 미리보기 항평가(제함의) (조안) 요약문 (우주-설권) pdf 최요 파일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문(무주-설천).pdf 필역, 파일 미리보기		주민의	건 제출서 (무주-설권) hwp 원, 교일 미리보기			
주민의견제출서(무주-설천).hwp 및 파일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환경 계목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량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국 형영향평가(재협의) 초인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땅관련 절부 지자처 위울 위소 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략기간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	에 행사 운영지침』		
	Latin		공럽기간 (변경) #초 : 2020.05 13(금)~2020.04.24(금X토요텔 및 공휴일 제외)			
o 공람기간 : 2020,03,13,(금)~2020,04,24,(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8 - 3,63,63, (3,13)~3,63,04,24,15,65,5 및 공유일 제외) 1경 : 2020,08,13,(금)~2020,05,01,(금)도요일 및 공유일 제외)			
 공람장소: 무주군(건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동군(환경과, 용화면사무소) 			공용장소 : 무주군(안설과,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얼돌군(환경과, 물화면사무소)(변경없	(金)		

(그림 5)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홈페이지 게시 - 무주군(www.muju.go.kr), 영동군(www.yd21, go.kr)

	당초		변경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B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업명	무주 무주-설천 도면확정공사	사업명	무주 무주-설천 도본확장공사
사업시행자	국보고통부	사업시행자	국선고통부
사업구분	도쿄의 건설	사업구분	모르의 건설
사업지위치	건타복도 무주금 무주읍 (무섭보 132) 오산리 ~ 전하복도 무주군 섭천면 (상도봉로 301) 소천리	사업자위치	전략부모 무주군 무주읍 (무열로 132) 오산리 - 전략부모 무주군 설천면 (삼도본로 301) 소천리
응인기관	익산지방국료관리경	유민기관	익산지방국퇴관리청
Φ£	(요한)0000 표저 및 목자.pdf (요한)1010 의한된[1-14] pdf (요한)1010 의한된[1-14] pdf (요한)1010 의한된[1-14] pdf (요한)1010 의한경망한다 대상지역업정[1-138] pdf (요한)1010 이번 개통[138-01] pdf (요한)10500 연가장 및 한테 문화 설립질자[8]-106] pdf (요한)1051 분석문장(107-162] pdf (요한)1051 개선문장과산[1623-270] pdf (요한)1051 개선문장과산[1623-270] pdf (요한)1051 개선[1300-390] pdf (요한)1052 의원가(1331-349] pdf (요한)1052 의원가(1331-349] pdf (요한)1052 의원가(1331-349] pdf (요한)1053 의원가(1331-349] pdf (요한)1054 제지의[1631-1446] pdf (요한)1054 제외의[1631-1446] pdf (요한)1054 제항제필(1615-156] pdf (요한)1054 제항제필(1615-156] pdf (요한)1055 위학공인(1615-156] pdf (요한)1055 위학공인(1615-156) pdf (요한)1050 위학공인 위학공인(1615-165) pdf (요한)1050 위학공인 위학공인(1615-165) pdf (요한)1050 위학공인 위학공인(1615-165) pdf (요한)1050 위학공인 위학공인(1615-165) pdf (요한)1050 위학공인(1615-165) pdf	소안	(요만)0000 로지 및 목하 pdf (요만)0100 요만(1-14)pdf (요만)0100 요만(1-14)pdf (요만)0100 요만(1-14)pdf (요만)0100 요만(1-14)pdf (요만)0100 차명(1-14)pdf (요만)0100 차명(1-14)pdf (요만)0100 개(자원(1)+0+0)pdf (요만)0100 개(자원(1)+0+0)pdf (요만)010 가 나타하라나(1-14)pdf (요만)011 가 나타하라나(1-14)pdf (요만)011 가 나타하라나(1-14)pdf (요만)012 가 나타하라나(1-14)pdf (요만)013 조망(1-14)pdf (요만)013 조망(1-14)pdf (요만)013 조망(1-14)pdf (요만)014 보이(1-14)pdf (요만)014 보이(1-14)pdf (요만)015
a 안공합 루만	미건수월	조인공장 주인	의견수령
소안 공고일	2020.03.12	소안 공고일	2020.03.12
요안 공합 기간	2020.03.13 - 2020.04.24	소안 공랑 기간	2020.03.13 - 2020.05.01
공합 장소	무주근형 전설과, 무주중사무소, 설선면사무소, 명중근형 환경과, 문화면사무소	중합장소	무주근형 건덬과, 무주읍시무소, 덬원면사무소, 영중근형 환경과, 용화면사무소
설명의 장소	무주군 무주음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종군 음화면사무소	설명의 장소	무주군 홈페이지(비대면 설명회)
설명회 일시	2020.04 21	설명의 일시	설명회 명상 게시기간 (2020년 4월 27월~2020년 5월 1월)
plat sta site	2020.03.13 - 2020.05.01	0120 38.8. 7189	2020.03.13 ~ 2020.05.08

(그림 6)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홈페이지 게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고사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0-530호	동독일	2020-04-16
체목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 혐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변경) 재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설명회 계획을 취소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무주군 (변경)공고문(안)(무주-설천).hwp

02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문(무주-설천).pdf

주민의견 제출서(무주-설천).hwp

무주-설천 도로(주민설명회)-나래이션포함:pps)



(그림 7) 비대면 설명회 영상 홈페이지 게시 - 무주군(www.muju.go.kr)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결과

7.1. 지역주민 의견

무주 설천 간 국도건설사업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건의서

위 국토 전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용강리 342번지 일대를 마음주인들은 성토구 간으로 지나는데 교차로가 무주군 설천면 산길마을과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에 생겼으로 용강리의 연료한 주민들은 너무 원거리를 도보로 귀가하는 여러용 이 있습니다. 선형이 일자로 잡히면 도로주면 교통자고 위험이 있으므로, 용화 면 용강리 342번지 주변에 주민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 니다. 국문건설사업에 주민의 편의설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시는 취지로 주민 들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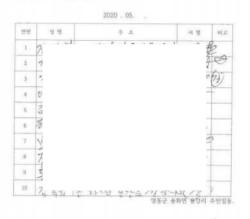
2020 - 05. .

영년 설명 주소 4명 씨고

1
2
3 14
4 - 5
5 7
6 경
7 7
8 경
9 / 10
10 C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주면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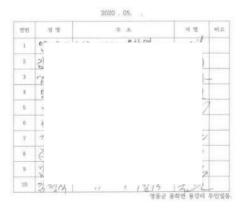
무주 설한 간 국도건설사업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건의서

위 국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용강리 342번째 혈대를 마음주민들은 성토구 같으로 지나는데 교차로가 무주군 열천만 신경미출과 역동군 용화면 용화리에 생경으로 용강리의 연호한 주민들은 너무 원거리를 도보로 귀가하는 여러용 이 있습니다. 선형이 일자로 잡히면 도로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용화 면 용강리 342번지 주면에 주민 편의을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시길 바람 나다. 국도건설사업에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시는 취지로 주민 등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무주 설천 간 국도건설사업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건의서

위 국토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용강리 342번지 일대를 마음주민들은 성토구 간으로 지나는데 교차로가 무주군 설천면 신경마을과 영동군 용확면 음화리에 생강으로 용강리의 연호한 주민들은 너무 원거리를 도보로 귀가하는 여러움 이 있습니다. 선행이 일자로 잡히면 도로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용확 면 용강의 342번지 주변에 주민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 나다. 국도건설사업에 주민의 편의성과 인천성을 고려하여 주사는 취지로 주민 등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7.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I. 총괄		
환경청	○동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무 주군 설천면 소천리 구간의 국도30호 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 경영향평가(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 과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방안과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반영하고, 사업시행 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 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되는 지역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제시하였음	
	○평가서에 제시하는 환경현황 조사내용, 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 모든 내용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되,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	및 저감대책 등을 공사시와 운영시 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에는 조사자 인 적사항과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및 산정 근거(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등)를 명확히 제시	인적사항과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 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반영]
	Ⅱ. 항목별 협의내용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감 시설물(교량, 배수관, 통로암거, 측구, 유도울타리 등) 설치계획(배치, 규모, 수량 등)을 수립·제시하였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환경청	- 사업구간과 그 주변의 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생태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실시하고, 분석된 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 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된 생 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 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였음	
	- 도로공사로 생태적 단절 또는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구간을 제시하고,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도로구간, 저감시설* 배치계획(위치, 규모, 수량을 결정하고, 저감시설별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 생물군 포함)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 *교량, 생태터널, 배수관, 통로암거, 측구, 유도울타리 등	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구간을 제시하고,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도로구간, 저감시설 배치계획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	[반영]
	○계획노선 주변 내륙습지(당산리습지, 개금습지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직접적인 영향권역에 위치하는 경우 현지 정밀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도로개설에 따른 영향 예측 및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논습지 및 하천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정보 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 향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현지조사 결과, 하천과 산림지역에서 수달, 삵, 원앙, 흰목물떼새, 어름치, 감돌고기, 돌 상어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 서식 확인	능성이 있는 법정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 및 보전	[반영]
	- 각 대상 법정보호종, 주요 생물종 및 서식지에 대하여 번식기, 산란기 등 보호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월 1회 모 니터링 계획 수립(조사기간, 조사지 점, 조사경로 등 제시)	보호종, 주요 생물종 및 서식지에 대하여 번식기, 산란기 등 보호가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주요 생물종(법정 보호종 등)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 책을 공사 전에 수립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 축(KEI, 2010)」참조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대비하여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환경청	○계획노선이 횡단 및 인접하고 있는 하 천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수달, 돌상 어,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고 있는 바, 해당 생물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계획과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함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 는 바, 해당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 링 계획과 보전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각 생물군별의 영향여부, 주요 종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저감방안을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수계별, 구간별 로 제시	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제	[반영]
	 공사시 하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하천 구역의 토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 저감시설(카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등)에 대한 적정 규모, 위치, 개수를 구체적으로 산정·제시 	구역의 토사 유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나무 및 참나무류 등 보전가치가 있는 훼손수목은 수형, 흉고직경, 지형, 토양환경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최대한이식 또는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이식수목량 재산정 시 총 훼손수목량 의 10% 이상을 이식하고, 미이식 수 목에 대한 재활용 목표 및 실행 방안 제시 	이식수목량으로 재산정하였으며,	[반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서 법정보호종 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의 출현이 확인 되고, 운영시 정온시설의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 바, 방음벽 설치로 인한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류의 충돌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	[반영]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국립생태원, 2017)」 및「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 인(환경부, 2019)」등 자료 참조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2. 대기환경 분야		
환경청	가. 대기질		
	○공사시 콘크리트 혼합설비(B/P) 및 골	○ 공사시 골재선별기(C/R)는 미설치	[반영]
	재선별기(C/R)를 설치·운영 여부를 명	할 계획이며, 콘크리트 혼합설비	
	시하고, 해당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	수립·제시하였음	
	립하여야 함		
	○차량운행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최신	○ 카랴으해에 따르 베촏랴 사저 시	ГнГод]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배출계		
	수를 적용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타이		
	어·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추가 고	· · · · · · · · · · · · · · · · · · ·	
	려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을	등을 추가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	
	재실시하여야 함	및 영향 예측을 재실시하였음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66호')」,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국립환경과학원, 2015)」,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수도권대기환경청, 2012)」 등 참조		
	○ 계취 1 시 즈 기고디너 ○ 사키차 세고	· 다녀 서키이 코러취 그게져이 계취	[ri] Ol]
	○계획노선 중 가곡터널을 설치할 예정 인 바, 평가서(본안) 작성시 터널 설치		[반영]
	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기환경		
	적 단단한 1세 국단 세탁 중 에기원 중 측면의 내용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터널 입·출구 인근 주요 영향예상 대상		[반영]
	시설(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 and the second	
	조사·분석(이격거리, 지형적 차폐여부		
	등)을 실시하고, 터널 입·출구 인근 정온	향조사지점으로 추가하였음	
	시설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		
	- 분류등가모델 또는 AERMOD 등을	- AERMOD를 활용하여 영향 예측	[반영]
	활용한 영향 예측 실시	을 실시하였음	
	- 공사시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공사시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최	 [반영]
	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시 별도의 환기시설		
	도입 필요성 검토·제시	설 도입 필요성 검토·제시하였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계획노선과 주변에 다수의 주거시설이	ㅇ계획노선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	[반영]
환경청	위치하여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책을 수립·제시하였음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시설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세륜·세차 및 살수시설 운영, 이동식	- 세륜·세차 및 살수시설 운영, 이동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으로 인한 침	식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으로 인	
	적된 먼지의 재비산 방지대책 등 구	한 먼지의 재비산 방지대책 등 구	
	체적으로 제시	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도로 신설로 인한 차량운행 증가 등에	○도로 신설로 인한 차량운행 증가	[반영]
	따라 인근 정온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따라 인근 정온시설의 대기오	
	영향 가중이 우려되는 바, 계획노선	염물질 영향 가중이 우려되는 바,	
	주변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	계획노선 주변 식재계획을 수립·제	
	소화하여야 함	시하였음	
	- 계획노선과 지형적 차폐가 없는 주	- 계획노선과 지형적 차폐가 없는	
	거·교육시설, 터널 입·출구 등을 우	'	
	선적으로 고려하여 식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식재하겠음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		
	○공사시 발생오수를 BOD, SS 기준 20	ㅇ공사시 현장사무소 발생오수는 가	[반영]
	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이		
	나(평가서 424쪽), 주변 수용하천의 수		
	질이 Ia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므로 오		
	수처리수의 목표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질기준을 강화(BOD, SS 10mg/L 이	
		하)하여 처리하겠음	
	ㅇ주변 수용하천의 수질이 매우 양호하		
		최소화를 위해 침사지의 규모 확대	
	공사가 진행되는 바, 수계의 토사유입		
	최소화를 위해 침사지의 규모 확대 및	음	
	다단 설치 등 토사유출 저감계획을 재		
	수립하여야 함		
	- 무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km 이내		
	에 설치되는 침사지는 최소제거입자		
	의 직경을 물리적으로 침전이 가능한		
	수준인 0.07~0.1mm(당초 0.2mm)로	침사지 규모를 확대하였음	
	강화하여 침사지의 규모를 확대		
	- 그 외 지역에 설치되는 침사지는 최소		
	제거입자의 직경을 0.1mm(당초 0.2mm)		
	로 강화하여 침사지의 규모를 확대	화하여 침사지 규모를 확대하였음	
	- 오탁방지막 설치 위치를 도면에 제시	- 오탁방지막 설치 위치를 도면에 제시함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교량 공사시 가물막이, 가도·축도, 터	○교량 공사시 가물막이, 가도·축도,	[반영]
환경청	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영향(부유토사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영향 및	
	발생량,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등) 및	저감시설의 저감효과를 예측하고	
	저감시설(오탁방지막 등)의 저감효과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모니터링 및	
	를 예측하고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모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	
	니터링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였음	
	립하여야 함	※가도 설치 등 교량과 관련된 공사로 인	
	※가도 설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홍	한 부유토사 농도 예측시 교량 공사시	
	수량을 적용하여 부유토사 가중농도가 과		
	소 산정되었는 바(평가서 399쪽), 가도 설	측을 실시하였음	
	치 등 교량과 관련된 공사로 인한 부유토		
	사 농도 예측시 교량 공사시기(갈수기, 평 수기)를 고려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		
	기기일 표더에서 8명 세탁일 될까 - 가물막이, 가도·축도 공사 등 수환경	_ 기무마이 기다.츠ㄷ 고시 드 스히	[н]-ој]
	기술 기의, 기고 국고 3 가 3 구원 3 에 영향이 큰 공정중에는 공사구간	'	[변경]
	의 수질 모니터링(상·하류 20~30m		
	이내)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		
	가하여 실시하고, 하류의 경우 유지	계획에 추가하였고, 하류의 경우	
	가능한 농도를 목표수질 농도로 설		
	기 o t o x j = n x r j o x x j j 정하여 관리	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겠음	
	○공사시 터널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질		[비-여]
	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방류할		[4 0]
	계획(평가서 423쪽)이나, 터널폐수가		
	상당량(388.4㎡/일) 발생하여 상수원보		
	호구역 및 수용하천의 수질에 부정적		
	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터널폐수의		
	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pH 8.5, BOD 10mg/L, COD 20mg/L, SS 25		
	mg/L, T-N 20mg/L, T-P 1mg/L 이하 등		
	- 터널폐수 처리수의 방류로 인한 방류	- 터널페수처리시설은 터널 시점부	[반영]
	하천의 수질 및 수온 등의 영향을 최	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을 확인후	
	소화하기 위해 터널페수처리시설과	시점부에 계획된 침사지에 유도처	
	인접한 침사지에 처리수를 유도하여	리할 계획임	
	방류하는 방안 검토		
	- 콘크리트 혼합설비(B/P) 및 골재선별	- 골재선별기(C/R)는 미설치하며, 콘	[반영]
	기(C/R)를 운영할 경우 폐수 발생량	크리트 혼합설비(B/P)는 폐수 발	
	을 산정하고, 폐수처리 및 재활용계	생량을 산정하고, 폐수처리 및 재	
	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활용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 운영시 터널 세척수의 발생량을 예측	- 운영시 터널 세척수는 약 0.25m³/min	[반영]
	하고 인근하천의 수질을 고려한 방류	/km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수 목표수질 설정 및 처리계획 수립	터널시점부 pH저감시설 및 세척	
		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환경청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 획인 바, 도로 및 지역(지형·지질, 토 지이용 등)의 특성, 유지관리 용이성, 처리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및 지역의 특성, 유지관리 용 이성,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비점 오염저감시설 비교·검토 후 최적의	[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교량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는 하천으		[HLOI]
	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 배제 및 처리계획(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야 함	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 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나. 지하수		
	○ 터널구간 주변으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영향시설의 분포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량과 영향시설의 지하수위 변동을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에 추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	따른 영향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였 으며,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량과 영 향시설의 지하수위 변동을 사후환	
	- 터널 공사지점 인근(상부 포함)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현황(위치, 용도, 제원, 채수량, 수위 등)과 하천 및 습지, 자분정(약수터), 휴·폐광산의 갱도 등의 분포 조사하고 관리목록 작성	려움이 있어서 문헌조사로 인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현황과 하천 등의 분포 조사결과를 제시	
	- 터널구간으로 관측정 및 지하수위 계 측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 등 조사·기록		
	- 터널 공사시 지하수 유출이 상당한 구간에 대해 지반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질구조(절리 방향 및 분포 등)를 조사·기록	주변 지반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	[반영]
	4. 토지환경 분야		
	가. 토양 ○계획노선 내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 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토양오염 개연 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함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환경청	-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여 계획노선 내에 존재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폐기물 수집업체, 공장 등 토 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을 조사(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등)하여 세부내용을 지형도 및 표로 정리하여 제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97호)」 별표 참조	획노선 내에 존재하는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 이 있는 시설·지역을 조사하여 세 부내용을 지형도 및 표로 정리하 여 제시함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중 개황조사방법을 따라 상세한 토양오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지점별, 항목별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제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반영]
	나. 지형·지질(토지이용 포함)		
	○설치되는 터널에 대해 시·종점부에 대한 절토 현황 및 식생 훼손면적, 경관영향 등을 명시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널의 시·종점부선정 및 갱문형식 등에 대한 대안을 선정·비교하고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함	현황 및 식생 훼손면적 등을 명시하고, 터널의 시·종점부 선정 및 갱문 형식 등에 대한 대안을 선정·비교하	[반영]
	○30m 이상의 과다한 절토사면고가 발생하는 구간은 지진, 홍수 등의 재해발생시 산사태 및 사면 붕괴가 발생할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절·성토계획 조정, 단차 조성 등 저감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절·성토 규모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은 비탈면 경사, 소단 조성, 비탈면 보강공법 등 저감방안을 합리적으 로 검토하여 절·성토 규모를 최소화 하였음	[반영]
	- 단층 및 절리 등 암석 내부의 불규칙한 지질구조에 따라 사면안정 분석시 대절토 사면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대절토 사면 은 산사태 및 사면붕괴에 따른 2차적환경피해의 위험성을 내포하여 검토	안정성 검토결과 기준안전율을 만족 하였으나, 산사태 및 사면붕괴에 따 른 2차적 환경피해의 위험성 방지를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불가피하게 30m 이상의 절토사면이	○불가피하게 30m 이상의 절토사면이	[반영]
환경청	발생하는 경우, 사면보강 및 처리대책	발생하는 구간은 사면보강 및 처리	
	을 철저히 수립하고, 운영시까지 지속	대책을 수립·제시하였으며, 운영시	
	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을 수립·제	사후모니터링 계획임	
	시하여야 함		
	ㅇ고성토·대절토 구간을 포함한 사면발	ㅇ고성토·대절토 구간을 포함한 사면	[반영]
	생 구간의 경우 사면 안정성 확보, 경	발생 구간은 사면 안정성 확보, 경	
	관향상 등을 위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관향상 등을 위해 현장여건에 적합	
	사면녹화공법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한 사면녹화공법을 검토·제시하였음	
	하여야 함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ㅇ도로공사 및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반영]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해당 권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	
	고려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을 수립하였음	
	나. 소음·진동	- 비리그가 시크 카이지지에 레워 뒤	Luj ed J
	○ 발파구간 인근 정온시설(주거시설 등)		[반영]
	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정	, and the second	
	도, 균열 여부 등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발파진동에 취약한 정온시설이 있		
	고, 들파선장에 귀되면 정근자들이 ᆻ 을 경우 평가서(585쪽)에 제시한 목표		
	(0.3kine)보다 강화된 기준(0.2kine)을		
	적용하여야 함		
	○발파구간 인근 축사에 대한 발파진동	○ 발파구가 인근 축사에 대한 발파지	[바영]
	도 환경목표기준을 0.1kine으로 적용하		
	고 있으나(평가서 585쪽), 발파 시행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02kine으로 적용(환경분쟁 피해배상		
	액 산정기준 등 참조)하여야 함		
	ㅇ계획노선 운영에 따른 도로소음 영향	○계획노선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시	[반영]
	은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시간대(24시	간대(24시간)별 교통량을 제시하였	
	간)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의 정보	으며, 도로소음 최대 발생시점을 고	
	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려하여 소음 예측후 기준 초과구간	
	시점을 고려하여 예측(교통 관련 전문	에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가 자문 포함)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		
	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축사에 대한 주간 도로소음 환경목표		[반영]
	기준은 60dB(A)를 적용(환경분쟁 피	목표기준은 60dB(A)를 적용하였음	
	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참조)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지방 환경청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보다 구체적 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발파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사후환 경영향조사계획 수립(조사지점, 조사 시기, 조사방법 등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정온시설명, 주소, 좌표 등) 를 명시		
	나. 위락·경관		
	○주요 사면 발생구간, 인공구조물 설치 등 경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 점을 예비조망점(원·중·근경)으로 추가 선정하여 외부경관 및 도로 내부경관을 포함하여 가시권분석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을 예비조망점(위·중·근경)으로 추가 선정하여 가시권분석 후 시뮬레이션	
	○계획노선 주변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지형)가 하천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바, 특이지형에 대한 문헌조사(전국자 연환경조사 지형조사상세표 등 제시) 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량 (교각 등) 설치로 인한 감입곡류구간 등 지형의 훼손여부를 도면 등으로 제 시하여야 함	헌조사 결과와 교량(교각 등) 설치 로 인한 감입곡류구간 등 지형의 훼손여부를 도면 등으로 제시하였 음	
	- 특이지형 구간에 대해서는 조망이 전 체적으로 잘 되는 곳에서 조망점을 선정하여 교량과 하천의 곡면구간과 의 경관변화를 예측	전체적으로 잘 되는 곳에서 조망	[반영]
	○계획노선 주변으로는 다수의 주거시설 이 존재하여 고성토가 인접하여 발생 할 경우 조망의 차단 및 차폐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노선 중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10m 이상의 고성토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관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필요시 교량 설치 등 검토)	10m 이상의 고성토가 발생하는 구 간에 대해서는 경관영향을 검토하 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도청			
	가.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관리 대책 마련	○법정보호종 관리 대책 마련	[반영]
	- 공사로 인한 생물에 영향 최소화 방		
	안 수립	방안 수립·제시함	
	- 공사인부에 의한 포획방지를 위해 야	- 공사인부에 의한 포획방지를 위해	
	생생물 보호교육 실시 등	야생생물 보호교육 실시하겠음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방안 마련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방안 수립·제시함	[반영]
	○비산먼지억제조치 철저로 공사장 인근 동식물 서식환경 영향 최소화	○비산먼지억제조치 철저로 공사장 인근 동식물 서식환경의 영향을 최 소화하겠음	[반영]
	나. 대기질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한 공사시 살수 및 세륜시설 등 저감 방안 수립		[반영]
	2. 환경보전과		
	가. 소음·진동 영향		
	ㅇ도로개발 시행시 주변 주거지역(마을)	ㅇ사업시행시 주변 주거지역 및 축사	[반영]
	및 축사시설 등에 대한 각 공정별 공	시설 등에 대한 각 공정별 공사장	
	사장비 최대투입·가동될 때 기준으로	비 최대투입·가동될 때 기준으로	
	소음·진동의 정량적(합성소음도) 예측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이	
	결과를 제시하고, 저감 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동 피해를 최소화 하겠음	
	ㅇ공사시 발파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반영]
	및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소음·		
	저진동형 건설기계 사용 등을 대해서는		
	인허가 신고 및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		
	해 민원이 예방 차단되도록 할 것		F -3 .37
	ㅇ공사시 인근 정온시설(마을 주거지역)		[반영]
	에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저소음시설		
	설치 등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강구할 것	소화 하겠음	
	나. 친환경적 자원순환		Lri vi i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 묘(세합 자성 이무 기저폐기묘)○ 「폐기		[반영]
	물(생활,건설,임목,지정폐기물)은「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폐기물은 적정	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처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친환경적으 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발생치		
	│ 도 서디임으도써 환경오염이 될정시 │ 않도록 할 것		
	6 보기 된 次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도청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무주군폐기 물처리계획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관 런법령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아 니하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다. 기타	계획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관련	[반영]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여 설치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시설 설치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	[반영]
	○특히 터널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 (390㎡/일) 등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 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방류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방 류 폐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기준을 강화하여 방류수로 인한 환	[반영]
	○도로 확장공사 관련하여 굴착 정지 작 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정공사 장비 소음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기 타 환경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 및 허가 기관에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특정공사 장비 소음외 비산먼지 억 제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 관련법 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 지하여 신고 및 허가 기관에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 도로확장 공사에 투입되는 특정장비로 발생되는 공사 소음으로 인근축사시설 (우사등) 및 정온지역(주거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분쟁 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 강구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반영]
	3. 물환경관리과		
	가. 상수원 보호구역○ 무주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설치 등 저감대책 수립후 공사할 것		[반영]
	나. 상수도 ○ 상수도시설 관련 해당 시군 상수도부 서와 협의	○상수도시설 사용시 관련 해당 시군 상수도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다. 개인하수, 물 재이용 등 ㅇ개인하수, 물재이용 관련 해당시군과 협의	○개인하수, 물재이용 관련 해당시군 과 협의하겠음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전북도청	라. 하수도	-	·
	○하수도 시설관련 해당부서와 협의	○하수도 시설관련 해당부서와 협의 하겠음	[반영]
	마. 온천, 지하수		
	○온천, 지하수 관련 해당 시·군 담당자 와 협의	○온천, 지하수 관련 해당 시·군 담당 자와 협의하겠음	[반영]
	바. 토양		
	○토양오염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해 당 시·군에 신고	○토양오염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하겠음	[반영]
	사. 비점오염원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배출부 하량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 행하기 바람		[반영]
	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제시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제시함	[반영]
	○증가된 배출부하량 만큼 할당받은 후 사업추진 가능	○증가된 배출부하량 만큼 할당받은 후 사업추진 하겠음	[반영]
충북도청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2005. 8. 10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내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 장관과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전북지 방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진행 중임	[반영]
	이 서식 및 서식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서식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출현·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기적으로 조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 및 「생물이동(생태통로)제 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이동 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동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 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동 사업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허가 시 개발(훼손)면 적에 해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 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허가 시 개발(훼손)면적에 해 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획에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충북도청	○사업추진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 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 하여야 함.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 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	
	○공사·발파 시 시험발파를 통해 현장여 건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이격거리 별 사용가능 장약량을 산출 발파로 소 음·진동 규제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온시설(주거지, 축사 등)에 대한 환 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이 격거리별 사용가능 장약량을 산출 발파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동시 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	
	○본 사업지역 내의 식생이 우수한 수목 은 재이식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오탁 방지막 등의 설치 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하 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본 사업구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금 본C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동 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 질오염총량 할당량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동군·무주	
	○사업구간 내 지하수 관정 철거 및 지 하수시설물 설치 시 지하수가 유출되 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지하수 관련된 사항은 영동군 수와 협의하여야 함.	지하수시설물 설치 시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 등 지하수 관련된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 생 및 부적정 예측의 등으로 주변 환 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 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 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반영]
	○본 검토의견은 우리 도 환경정책과 소 관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사업 시행 과 관련하여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 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함. 끝.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 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협의를 통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	비고
영동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	○본 사업은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	[반영]
	행령 제7조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	다 축소"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	
	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어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함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은「금강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할당 대상	[반영]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량할당 대상	관련문서를 부록에 제시하였음	
	이므로 영동군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ㅇ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	ㅇ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반영]
	전신고,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 등 환	사전신고,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 등	
	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사전절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등의 사전절차 사항을 이행하겠음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선형 및	ㅇ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선형	[반영]
	교차로 형식 등을 검토 후 최적안을	및 교차로 형식 등을 검토 후 최적	
	선정하여야 함.	안을 선정하였음	
	ㅇ지역주민들의 의견, 환경보전 및 주민	ㅇ지역주민의견, 환경보전 및 주민생	[반영]
	생활공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	활공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	
	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였음	
주민의견	○위 국토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용강	○용강리마을은 교통량이 매우 적은	[미반영]
장○환	리 342번지 일대를 마을주민들은 성토	구간으로, 진출입로 설치시 교통사	
외	구간으로 지나가는데 교차로가 무주군	고 위험성이 증가하며, 신길교차로	
29인	설천면 신길마을과 영동군 용화면 용	를 이용하여 신설노선 진·출입 접근	
	화리에 생김으로 용강리의 연로한 주	성 및 이동성이 양호하므로 진출입	
	민들은 너무 원거리를 도보로 귀가하	로를 미반영하였음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형이 일자로		
	잡히면 도로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있		
	으므로, 용화면 용강리 342번지 주변		
	에 주민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도건설사업에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시는 취지로 주민들의 뜻을 모아 건		
	의합니다.		